



건설부 國監에서 정상천 의원은 건설공사 하도급 이중계약실태를 지적하며 이에대한 방지대책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하도급 이중계약 근절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建設部, 94國政監査소식

국회 건설위의 지난 14일 건설부 국감에서 정상천 의원은 「원도급자가 발주처에는 높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실제계약은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있다」며 허위 계약자에 대한 벌칙 강화와 하도급 피해자 보상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으며, 재정구 의원은 「불법하도급-뇌물제공-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하도급계열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불법하도

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탁 의원은 「건설공사 감독과 관련한 법규의 난맥상 개선」을 촉구하고, 「도로건설계획은 국토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김옥천 의원은 노후블량교량 안전관리에 대해 「전국 교량의 10%에 달하는 1천 2백여개의 교량을 개축 및 보수 노후교량으로 판정해 놓고 사후관리지침이나 선정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80년대 이후 가설된 부실교량이 노후교량으로 둔갑되는 등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위험한 교량에 대한 통제제한 등 안전조치없이 방치한다면 언제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며, 문제교량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침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수근 의원은 「1백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현행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 사전유출 및 업체간 담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입찰업체들의 평균투찰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평균가낙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도입 여부를 물었다.

이상재 의원은 「공사비의

현실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시공 추방 원년의 해라는 구호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비현실적인 정부노임 단가와 공사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입찰제도와 관련 「정부공사의 낙찰제도가 62년 이후 6회에 걸쳐 변경을 거듭했으나 근본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격경쟁위주의 입찰제도에서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는 기술경쟁위주의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금규 의원은 「UR에 이어 각종 뉴타운의 영향이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실은 건설시장이 확대된다는 일면도 있으나 환경보전적인 건설기술을 사용하는 선진건설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하

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최재승 의원은 「대형건설업체들은 대형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는 이상 영업정지는 당하지 않고 가벼운 과징금 처분만 받거나 주의 또는 경고로 끝나는데 비해 중소건설업체들은 영업정지 등 과중한 제재를 받아 자금압박과 부도를 맞는 등 법집행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공사 하도급 이중계약실태 지적

정상천 의원은 건설부 국감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이중계약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하도급 이중계약 근절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정상천 의원은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의 근본원인이 오랫동안 공사계획, 설계, 입찰, 시공, 감리 등 업계의 구조적 병폐와 건설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위반자 처벌 강화는 물론 이중계약 고발시 피해 보상제도 도입과 이중계약여부 확인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그동안 하도급 이중계약 실태를 보면 외형적으로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열화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발주처에는 높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 하도급 계약서(명목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과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 신고하고, 실제 계약은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하여 그 차액을 비자금 등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계약은 구두 합의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실제계약은 하지 않은 채 시공부터 하게 하고 준공후 원도급자가 정산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같은 이중계약은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의 계속적 거래등을 빙자로 직·간접적 압력으로 하도급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원도급자는 비자금 조성으로 발주처와 유착경비 등 비정상적 지출에 사용하므로서

업계비리의 원인을 제공하고, 하도급자는 명목계약과 실제계약간의 차액(10-25%)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차액만큼 가공의 세무처리로 세무 부조리가 발생함은 물론 가공의 자재구매와 인건비 지출의 증빙서류 작성에 부과세 등 공과금 지출로 경영손실을 초래하는 등 막대한 비용손실과 인력투입 및 부정이 조장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세무조사시 허위자료가 발견되면 하도급업체만 처벌받고, 추정금 납부 등 이중적 불이익이 초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이중계약으로 하도급자는 저가수주로 경영악화와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하였고, 원·하도급자가 공히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성실시공이 어렵고 부실시공의 원인제

공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해온 것이다.

법령제도상으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강압에 의한 하도급자 이중계약 시행에 대해서 사후 고발시 피해 보상제도가 있어야 하는 등 사전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관련 개정이 필요한 해당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업법 제50조 제1항 제3의 2호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지한 경우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영업정지 6월 또는 하도급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벌칙조항 형평유지를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업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그러나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조)로 되어 있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거짓서면을 교부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규정은 원도급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

자에게는 이중계약차액을 받도록 해 고발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해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제56조

감리자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내용에 이중계약 확인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중계약 확인 여부 규정을 신설하면 이중계약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중계약을 적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관련 법령 전면 재검토

건설부는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추방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예산회계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건설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사 입찰제도를 비롯한 각종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개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10~20년간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그동안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주요 구조물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종전 3~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하고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도 제3자에게 피해를 가했거나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건설관련 기술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또 일괄하도급을 실시했을 경우 종전 영업정지에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